월간노동리뷰 | 2012년 8월호 pp.74~90
ⓒ 한국노동연구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방향*

이 규 용**

Ⅰ. 머리말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6년 93,786명에서 2010년에는 141,6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6월 말 현재 147,091명에 이르고 있다(출입국외국정책 통계월보, 2012, 6). 그동안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주된 정책 관심은 주로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문화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 역사를 고려할 때, 이들 중 상당수는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있으며(김이선 외, 2008),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통합이 중요하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부간 연령격차가 크고 저소득 계층이 많으며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이 낮고 빈곤 경험률이 30~40%[1]에 이르는 현실은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기술교육 및

---

* 이 글은 이규용・박성재・강혜정(2011),『결혼이민자 가정과 노동시장 통합』, 한국노동연구원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정리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eeky@kli.re.kr).

1) 김승권 외(2010),『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업연계 서비스는 이들의 빈곤 또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의 취업욕구가 매우 높음에도 이들의 낮은 취업률은 취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양육 병행, 서투른 한국말 등의 이유 외에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실태와 취업지원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활동 실태

1. 결혼이민자의 추이

결혼이민자는 1980년대에는 종교단체를 통하여 일본 여성들이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여 오다가 베트남・캄보디아・몽골・태국 등으로 국적이 다변화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는 2006년 93,786명에서 2012년 6월 말 현재 147,09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2011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다.

〈표 1〉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증감 추이(2012년 6월 말 기준, 누계)

(단위 :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결혼이민자 수	93,786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7,091
전년(월)대비	25.0	17.7	11.0	2.1	13.2	2.1	2.1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2012년 6월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결혼이민자의 국적별・성별 현황을 보면, 2012년 6월 말 현재 전체 147,091명 중 여자가 126,741명으로 86.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51,934명(41.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38,537명(30.4%), 일본 10,383명(8.2%), 필리핀 8,864명(7.0%)의 순이다.

〈표 2〉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 성별 현황(2012년 6월 말 기준, 누계)

(단위 : 명, %)

	전체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 체	147,091	63,639	(28,630)	38,753	11,448	9,118	4,583	2,613	2,412	14,525
여자	126,741	51,934	(20,953)	38,537	10,383	8,864	4,577	2,568	2,349	7,529
남자	20,350	11,705	(7,677)	216	1,065	254	6	45	63	6,996

주 : 표에서 중국은 한국계를 포함한 숫자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2), 『2012년 6월 출입국 · 외국인 통계월보』.

그런데 위의 통계에는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는 제외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자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혼인귀화자는 2007년 14,609명에서 2010년에는 49,938명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 6월 현재 모두 63,906명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전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 1>의 통계와 <표 3>의 통계를 합한 수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수치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결혼이민자는 2012년 6월 현재 210,997명에 이르고 있다.

〈표 3〉 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자의 연도별 추이(누계)

(단위 :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14,609	22,525	39,666	49,938	60,671	63,906

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2), 『2012년 6월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그림 1〕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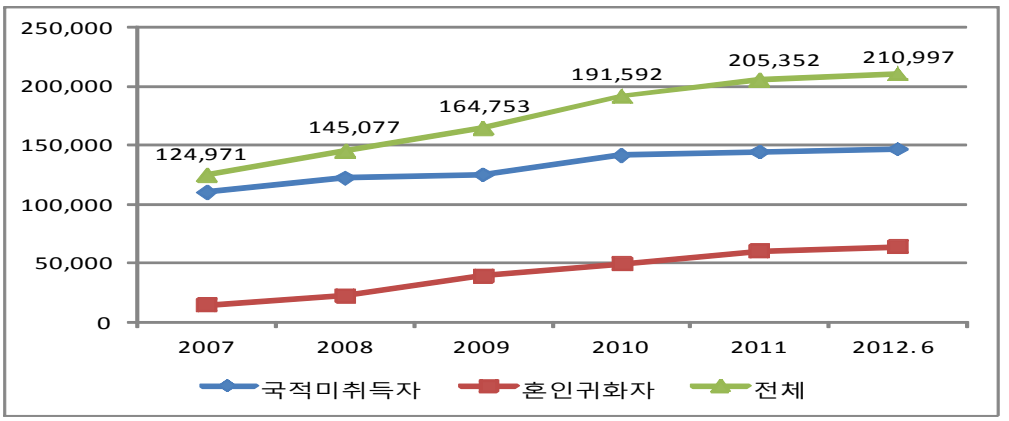

주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2), 『2012년 6월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이용하여 계산.

〈표 4〉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유무별 구분(2010년)

(단위 : 명, %)

	전 체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기타
전 체	211,458 (100)	63,110 (29.8)	58,108 (27.5)	41,877 (19.8)	12,132 (5.7)	10,761 (5.1)	2,858 (1.4)	2,776 (1.3)	1,053 (0.5)	18,783 (8.9)
국적 미취득자	141,654 (67.0)	31,664 (22.4)	35,023 (24.7)	35,355 (25.0)	7,476 (5.3)	10,451 (7.4)	2,421 (1.7)	2,533 (1.8)	462 (0.3)	16,269 (11.5)
국적 취득자	69,804 (33.0)	31,446 (45.0)	23,085 (33.1)	6,522 (9.3)	4,656 (6.7)	310 (0.4)	437 (0.6)	243 (0.3)	591 (0.8)	2,514 (3.6)

주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자료 : 행정안전부(2011), 「외국계주민현황조사」.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국적 미취득자(67.0%)가 국적취득자(33.0%)보다 훨씬 많으며, 국적취득자의 78.1%가 중국(한국계 포함)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국적 미취득자 역시 중국(한국계 포함)이 47.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중국국적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시각을 달리하여 <표 4>를 이용하여 출신국가별로 혼인귀화자의 비중을 구해 보면, 대만이 1,053명 중 591명이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취득률이 56.1%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한국계 중국인 49.8%, 비한국계 중국인 39.7%, 필리핀 38.4%의 순이다. 이에 비해 일본출신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자 비중은 2.9%에 불과하며 태국도 8.8%로 낮은 수준이다.

2. 결혼이민자 가정의 취업 및 소득

여기서는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본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가 각각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1년 9~11월 중에 실시하였다.

<표 5>는 현재의 취업상태에 대한 질문결과이다. 여성 결혼이민 응답자 909명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32.6%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2009년 전수조사에 입각하여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취업률(37%)과 유사하다. 결혼기간별 취업자의 특성을 보면 표에서 보듯이 결혼초기(1~3년 미만) 취업률은 8.1%이나 3~5년차의 취업률은 18.0%이고, 5~10년차는 32.8%, 그리고 10년 이상 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48.0%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취업하고 있어 결혼기간이 길수록 일하는 비율이 높다. 결혼 이후부터 한국생활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취업특성은 일반적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 이후 임신·출산·육아 등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5〉 한국에서 일한 경험 유무(결혼이민자)

(단위 : 명, %)

		사례 수	비중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이전에 일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일한 경험이 전혀 없다	무응답
전 체		100.0(909)	32.6	23.8	38.5	5.2
결혼 기간	1~3년 미만	100.0(124)	8.1	16.1	63.7	12.1
	3~5년 미만	100.0(139)	18.0	18.7	55.4	7.9
	5~10년 미만	100.0(314)	32.8	28.0	35.7	3.5
	10년 이상	100.0(327)	48.0	25.1	24.2	2.8
	무응답	100.0(5)	20.0	0.0	60.0	2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1),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노동공급실태조사」.

취업한 여성의 직종은 다양하나 대체로 단순직종이 많다. 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월평균소득은 90만 원 수준이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34시간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6〉 취업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소득 및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사례 수(명)	평균(만 원)	사례 수(명)	평균(시간)
전 체	259	90.7	251	34.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1),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노동공급실태조사」.

취업률은 32.6%지만 이전의 취업경험이나 취업 희망비율을 고려하면 이들의 취업수요는 매우 높다. <표 5>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23.8%는 현재는 취업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취업한 경험을 갖고 있어 이들을 포함할 경우 취업자 및 취업경험자 비율은 절반을 상회한다. 또한 <표 7>에서 보듯이 취업한 경험이 전혀 없는 350명을 대상으로 향후 취업할 의사를 질문한 결과 71.4%가 취업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볼 때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는 취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350명을 대상으로 미취업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집안일, 자녀양육이나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22.6%로 이 두 이유가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을 차지한다. 그 외에 '배우자나 시부모의 반대'(9.4%),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8.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건이 되면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7〉 취업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의사

		사례 수	앞으로 취업할 의향 유무					
			예		아니오		무응답	
			명	%	명	%	명	%
전 체		350	250	71.4	91	26.0	9	2.6
결혼기간	1~3년 미만	79	71	89.9	5	6.3	3	3.8
	3~5년 미만	77	58	75.3	18	23.4	1	1.3
	5~10년 미만	112	67	59.8	41	36.6	4	3.6
	10년 이상	79	52	65.8	27	34.2	0	0.0
	무응답	3	2	66.7	0	0.0	1	33.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1),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노동공급실태조사」.

결혼이민자의 일에 대한 높은 수요 및 이러한 수요의 충족을 위한 취업지원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결혼이민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응답자 781명을 대상으로 결혼 이주의 목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가 29.1%이고, '돈을 벌어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가 8.3%로 나타나 결혼이주를 선택한 배경 중의 하나로 경제적인 이유가 1/3을 상회한다. 이외에 주요 이유로 '본국에서 괜찮은 배우자를 구할 수 없어서'가 21.5%이고 '국제 결혼이 흔해서'가 18.2%이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일본을 제외하면 중국국적(조선족 포함)과 태국의 경우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이 대략 40% 전후인 데 비해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의 경우 50%가 넘는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 동기로 경제적 이유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송금도 취업수요의 주요한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인 시 남편과 친정에 정기적으로 송금하기를 합의하였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응답자(909명)의 23.5%가 '예'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과 몽골은 각각 59.7%와 58.6%로 조사대상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는 각각 31.9%이다. 조사시점 현재 지난 1년 동안 본국의 가족에게 송금하였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11.7%는 정기적으로 송금하며, 32.3%는 1년에 1~2차례 송금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의 44.0%인 400명이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계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본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여기에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송금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임금이 송금액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규용 외(2011) 참조.

〈표 8〉 월평균 총소득 · 소비 · 저축수준

		사례수 (명)	월평균 총소득 평균(만 원)	사례수 (명)	월평균 생활비 평균(만 원)	사례수 (명)	월평균 저축액 평균(만 원)	저축률(%) (저축액/소득)
전 체		714	240.54	715	164.59	712	39.24	14.72
배우자 연령	20대	6	188.33	6	100.00	6	40.00	21.66
	30대	110	258.57	109	163.50	110	54.00	18.60
	40대	434	242.94	433	168.41	429	39.42	15.20
	50대	139	227.58	143	163.90	143	26.38	10.07
	60대 이상	16	176.00	16	100.19	14	61.07	19.43
	잘 모름	9	254.44	8	162.50	10	22.20	7.4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1),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노동공급실태조사」.

다음으로는 가계경제에 대한 보조 필요성이다. 현재 취업 중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일을 하는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가계에 도움'이 26.7%이고, '생활비 부족'이 24.7%, 그리고 '가족의 생계 책임' 18.6% 등 경제적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결혼이민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40만 원이다. 이는 우리나라 분위별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2~3분위에 해당된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5만 원이고, 월평균 저축금액은 39만 원인데 이 저축금액은 통계청 가계조사의 소득 2~3분위 저축수준의 범위에 있는 수준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소득수준을 배우자의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으며 40대와 50대에는 소득이 하락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들의 직종이 생산 및 단순직 등 주로 저소득 생산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9〉 현재의 소득수준 만족도

(단위 : 명, %, 점)

		사례 수	비 중						평균 : 점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전 체		909	5.0	28.1	50.1	14.7	0.3	1.9	2.77
결혼 기간	1~3년 미만	124	1.6	12.9	62.1	18.5	0.8	4.0	3.04
	3~5년 미만	139	3.6	20.9	58.3	16.5	0.0	0.7	2.88
	5~10년 미만	314	3.5	23.2	53.2	18.5	0.3	1.3	2.89
	10년 이상	327	8.3	41.9	38.8	8.9	0.3	1.8	2.50
	무응답	5	0.0	0.0	60.0	20.0	0.0	20.0	3.25

주 : 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불만족함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1),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노동공급실태조사」.

<표 9>는 현재의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여성결혼이민자나 배우자 모두 현재의 생활에 대해 다소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평점 2.77점으로 평균(3점)보다 낮다. 소득수준 만족도를 결혼기간별로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길수록 만족도 평점이 낮다. 이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유추 가능한 해석으로는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기대수준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연령이 높아지지만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 고용을 통한 소득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배우자의 취업능력이나 결혼이민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소득향상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민자 부부의 높은 연령차이와 배우자의 직종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가계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혼이민자가 가계의 주된 취업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며, 이런 점에서 이들의 취업수요 및 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향후 10년 후와 60대에 이르렀을 때 걱정거리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향후 10년 후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문제(46.3%)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교육 및 취업문제(35.5%)를 지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기간이 오래될수록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결혼 5년차 미만에서 경제적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35% 수준인 데 비해 5~10년차는 40.8% 그리고 10년 이상은 58.8%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10년 후 걱정거리(복수 응답)

(단위 : 명, %)

		사례 수	비 중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자녀교육 및 취업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기타	무응답
전 체		753	46.3	18.2	35.5	9.6	0.7	1.3
결혼 기간	1~3년 미만	87	34.5	14.9	40.2	16.1	3.4	1.1
	3~5년 미만	106	35.8	12.3	46.2	13.2	0.9	0.0
	5~10년 미만	267	40.8	19.5	33.3	14.6	0.4	1.5
	10년 이상	289	58.8	19.7	32.2	1.7	0.0	1.7
	무응답	4	50.0	50.0	25.0	0.0	0.0	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1),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노동공급실태조사」.

〈표 11〉 60대 전후 걱정거리(복수응답)

(단위 : 명, %)

		사례 수	비중					
			노후생활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자녀의 취업 및 사회생활 적응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기타	무응답
전 체		753	59.4	23.6	18.9	6.0	0.7	1.5
결혼 기간	1~3년 미만	87	57.5	17.2	16.1	10.3	2.3	2.3
	3~5년 미만	106	50.0	25.5	23.6	9.4	0.9	0.0
	5~10년 미만	267	57.7	22.8	18.7	8.6	0.4	1.5
	10년 이상	289	65.4	25.6	17.6	1.0	0.3	1.7
	무응답	4	25.0	25.0	50.0	0.0	0.0	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1), 「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노동공급실태조사」.

60대 전후의 시기에 걱정거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경제적 문제(59.4%)로 10년 후의 걱정거리 조사에 비해 비중이 더 높으며, 결혼기간별로 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결혼기간이 길수록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물론 결혼이민자 가정이 아닌 내국인 조사를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국인 가정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즉 남성과 여성 간 높은 연령격차,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 배우자의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가 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림 2]에서 보듯이 부부간 큰 연령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계의 소득주체가 결혼이민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이들의 취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절실함을 의미한다.

〔그림 2〕 외국인 아내 주요 국적별 부부의 연령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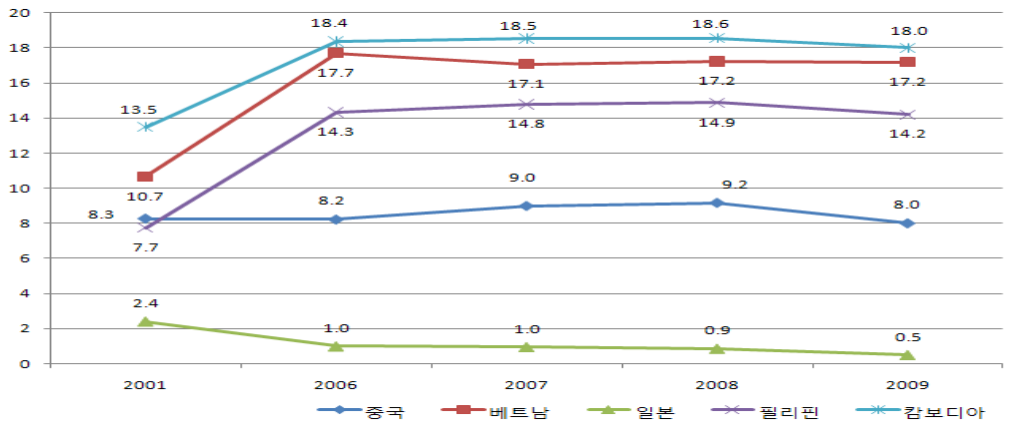

자료 : 혼인신고자료(각 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0), 「이민 및 외국인정책 개선방향」 보고서(미발간) 중 김이선의 원고에서 재인용.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의 선제적 해결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 자녀세대의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소득안정을 위한 취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은 쉽지가 않다. 다음 장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갖는 현실적인 제약을 짚어보자.

Ⅲ.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실태

여기서는 HRD-net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939명이 총 1,376건의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평균 참여횟수는 1.4회이며 최대 직업훈련 참여횟수는 7회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한 훈련분야는 음식・조리, 컴퓨터・전산, 한국어, 이미용・피부 등 몇 개 분야로 한정되고 있다.

〈표 12〉 직업훈련 참여분야

(단위 : 명, %)

	참여자(%)
한국어	11.8
이미용/피부	10.4
네일아트	3.1
컴퓨터전산	23.2
간호	3
제과・제빵/떡	3.6
통・번역	4
바리스타	1.7
무역/회계/전산실무	3.8
음식/조리	24.3
봉제/의류수선/홈패션	3.9
사무/사무능력	6.1
기타	1.4
전 체	100.0(1,37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원자료.

2010년 참여 훈련생의 훈련수료율은 79.5%이고 중도탈락률 14.3%, 취업률 22.3%로 나타났다. 2011년은 분석시점(11월) 현재 훈련 중인 자를 제외한 수료자와 미수료자 대비 중도탈락자는 11.3%, 취업자는 9.6%이다. 2개년을 합할 경우 중도탈락률은 15% 내외이다.

2010년 훈련 수료자의 취업률은 22.3%이며, 훈련 직종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이미용·피부직종이 4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컴퓨터·전산(31.4%), 무역·회계·전산실무

〈표 13〉 취업자의 취업직종

(단위 : 명, %)

			취업자		수료자
			명	%	
2010	직종	이미용/피부	5	45.5	11
		네일아트	0	0	1
		컴퓨터전산	11	31.4	35
		간호	0	0	1
		제과제빵/떡	0	0	1
		무역/회계/전산실무	3	27.3	11
		음식/조리	4	12.9	31
		봉제/의류수선/홈패션	0	0	6
		사무/사무능력	1	8.3	12
		기타	1	33.3	3
	전 체		25	22.3	112
2011	직종	한국어	2	2.7	73
		이미용/피부	4	5	80
		네일아트	2	5.4	37
		컴퓨터전산	24	9.6	251
		간호	3	9.7	31
		제과제빵/떡	3	13.6	22
		통·번역	8	19.5	41
		바리스타	1	5	20
		무역/회계/전산실무	7	20	35
		음식/조리	25	10.1	248
		봉제/의류수선/홈패션	1	2.9	35
		사무/사무능력	10	16.9	59
		기타	1	7.7	13
	전 체		91	9.6	94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원자료.

(27.3%) 순이다. 2011년에는 무역・회계・전산실무가 20.0%로 가장 높고, 이어서 통・번역(19.5%), 사무능력(16.9%), 제과제빵 및 떡(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용이나 네일아트처럼 상대적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훈련 직종의 취업률이 5% 내외로 낮으며 음식・조리분야의 취업률 또한 10.1%로 상대적으로 낮다.

취업한 116명의 취업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용보험 사업장DB와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 58개 일자리만 사업장 정보가 확인되어 나머지 58개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추론된다. HRD-net에서 집계된 취업사업장의 규모를 보면 사업장 정보가 확인된 58명 중 32명(55.2%)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49명(84.5%)이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이 취업한 일자리의 고용의 질이 높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3]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높은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많은 다문화여성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지만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에 대한 일부 배우자 및 가족의 부정적 태도나 자녀 및 노부모 부양문제도 취업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 자녀돌봄 지원, 자녀세대의 교육지원, 가정의 소득안정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결론 대신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Ⅳ. 취업지원 정책방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선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들 가정이 저소득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커 노동시장 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사회복지비용의 증가가 우려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세대의 안정적 정착기반이 저하될 수 있어 세대를 거쳐 사회통합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상당수는 초기 정착단계에 집중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

3) 감사원(2011. 4)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은 23.3%에 불과하고 취업한 경우도 시간제나 일용직이 7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다. 본장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맞춤형 정책방향 설정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초하되, 결혼이민자가 갖는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단순히 경제적 주 책임자 혹은 보조자로서의 기능을 벗어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지향점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 배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주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여기서도 이를 중심으로 정책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대상을 결혼이민자로 국한하지 말고 이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안정이나 취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혹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즉 직접일자리, 교육훈련, 노동시장 인프라(취업알선 등), 보조금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의 관점에서 이들 가정의 소득안정을 위한 취업지원정책의 기조설정 및 정책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가령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되고 있듯이 결혼이민자 가정을 소득상태나 혹은 가정 내 상태(이혼, 사별), 학력별 격차, 일·가정 양립 문제 등을 고려한 목표집단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목표집단에 대한 정책지원이 기존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내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분야별 취업지원정책 방향

가. 전달체계의 개선

정부 정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정책의 단절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결혼이민자 혹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다양한 노력들은 부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물량 면에서 보면 충분한 정책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심지어는 내국인 취약계층에 비하여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의 체감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훈련성과 등이 낮은 것은 취업성과의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 정책 전달체계 간 효율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목표집단별 정책수요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청되지만, 개별 프로그램별 각 집행기관이 이를 완결적으로 기획 및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문제는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한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각 정책 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상별 그리고 정책수단별 메트릭스형 결합을 통해 정책대상을 구체화하고 각 대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정한 후 이러한 프로그램의 집행과 관련한 정책수행기관의 융합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각 정부부처가 별도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각의 집행기관에 의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정책기획단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융합형 설계를 통해 각 대상자별로 맞춤식 설계를 통해 수요자에게 체감성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부처 간 영역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고 필요한 프로그램의 집행기능을 어떻게 연계해서 설계할 것인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책의 주도권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전달체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의 보완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요가 존재하고 또한 기존의 연구나 현실의 정책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직업훈련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훈련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이 있다.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의 부재, 결혼이민자의 훈련역량의 미흡, 또는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한계, 훈련 후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훈련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인식의 제약, 훈련 후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만든 가정 내 제약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가지 현실적인 제안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일을 통해, 혹은 직장체험을 통해 한국사회, 직업의 특성, 직장 내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사업 참여, 인턴십 제도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범적 적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임신・출산・육아 등 전형적인 M자형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영역대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취업지원보다는 취업에 대한 적응과정을 높이는 정책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 현재는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을 요구하면서 주로 직종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과 더불어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서의 직장에서의 취업경험을 쌓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다양화된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특화된 사업들을 벗어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장벽을 낮추고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교육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과 재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은 주로 결혼 초기 젊은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생활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국 거주기간이 상당히 지난 중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에는 결혼여성이민자의 취업역량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연계 직종의 범위가 외국어 강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가구특성을 고려하면서 다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므로 육아 및 자녀 보육, 집안 살림 등의 가사노동 부담에 의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하더라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육아 및 자녀보육 등의 가사시간을 확보하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재택근무(home-based work) 또는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보장된 전일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자리 여건이 더 열악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농촌에 살면서 가사일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 노인돌봄 도우미, 농촌관광 및 문화행사 도우미, 다문화강사, 어린이집 강사, 영어강사, 공부방 교사 등이 있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의 선결과제로 육아 및 자녀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육아 문제가 취업참여 및 노동시간, 취업교육 등 모든 활동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3세 미만의 영유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부족, 농촌의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보육시설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육아를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취업희망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한 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아동 수가 매우 적은 농촌의 경우, 보육시설 마련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소수 아동을 가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보육하는 가정보육도우미제도 시행을 검토하는 등 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 지원 제도를 농촌의 다문화 자녀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와 맞벌이 부모를 위한 방과후 교육바우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과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남편 및 가족의 가사노동 분담, 생활방식 및 문화적 차이 이해, 관련 취업기술 전수, 취업교육 참여 협조 등은 원활한 한국 정착뿐만 아니라 취업활성화를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취업교육 참여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도움을 얻기 위해 부부 공동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 통계 인프라 개선 및 중장기 과제

결혼이민자 노동시장 문제는 현재보다는 향후에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편의 노동시장 은퇴, 자녀들의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의 불가피성이 제기될 경우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설계 및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생애주기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특성에 적합한 정책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복지프로그램이 결합된 형식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 인프라의 구축과 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기존의 실태조사 등이 존재하고 있고 정책개발을 위한 평가도 수행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계인프라나 정책평가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초기 정착단계가 아닌 노동시장 진입단계로 돌입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정책 관련 인프라나 평가기능도 여기에 맞추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KLI

<참고문헌>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0),「이민 및 외국인정책 개선방향」보고서(미발간).
고혜원(2010),「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09),「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평가」.
김승권 외(2010),『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혜 외(2009),『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이선 외(2007),『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_____(2008),『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리지 프로그램 추진방안』, 보건복지가족부.
민무숙 외(2009),『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2012년 6월 출입국・외국인 통계월보』.
양인숙 외(2010),『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규용・박성재・강혜정(2011),『결혼이민자 가정과 노동시장 통합』, 한국노동연구원.
장서영 외(2009),『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정기선 외(2007),『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행정안전부(2011),「외국계주민현황조사」.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front/index.jsp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index.jsp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http://mfsc.familynet.or.kr/